

의안번호	2204657
의 퇴 인	김병기의원
회 답 일	2024. 10. 18 .
추계번호	24D44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취업지원실시기관 ¹⁾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대군인 ²⁾ 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대군인을 최초로 승진임용하는 때에 그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 2) '제대군인'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 제2조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 포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상세 사유

□ 제대군인의 채용 시 우대(안 제16조)

- 개정안에 따라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 경력평가를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을 최초로 승진임용하는 때에 그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호봉의 상승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공공기관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봉이나 임금결정·승진심사 등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하는 제대군인이 근무하는 해당 기관의 수 및 임금·호봉 상승 대상자수, 임금·호봉 상승분 등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추정은 곤란함
 - 기관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연령·능력·근속성과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한 임금형태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임금의 형태 역시 상이함
 - 이에 호봉 인정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호봉인정 등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파악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